2019년 보호수 지정 및 지정해제 추진계획

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하고, 고사 등으로 지정 목적을 상실한 나무는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보호수 현황

○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: 16종 208주

구 분	계	느티나무	은행나무	회화나무	향나무	소나무	기 타 (11 종)
수량(주)	208	99	48	18	14	8	21

※ 기 타: 비술나무 8, 가중나무 2, 흑백나무 2, 음나무 2, 위성류 1, 갈참나무 1, 졸참나무 1, 돌배나무 1, 모감주나무 1, 물푸레나무 1, 살구나무 1, 중국 굴피나무 1

Ⅲ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절차

추 진 절 차	추 진 기 관				
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추진계획 수립 · 안내	시(市) → 구(區)				
.					
대상 수목 일제조사 및 지정(지정해제) 요청	구(區) → 시(市)				
•					
전문가 합동조사	전문가, 시(市), 구(區)				
•					
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결정	시(市)				
•					
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예정 수목 공고	시(市)				
•					
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고시	시(市)				

Ⅲ 보호수 지정

○ 관련법규

- ▶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
- ▶ 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▶ 「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」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-5500(2013.11.12.)호

○ 지정요건

- ▶ 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 등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
- ▶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은 「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침」에서 정한 보호수 선정기준(규격)에 의함
 - ※ 다만,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, 거목,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중식가치가 있는 수종은 보호수로 지정 가능

< 지정 요청 시 유의사항

- O 보호수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수목 소유자 및 관리자 의 견 사전 조사 필수(반드시 문서로 보호수 지정에 대한 동의 의견 기록)
- 자료 수집과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반드시 보호수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목을 지정 요청(단순 민원 등 부적합 수목 신청 시 반려 처리)

Ⅳ 보호수 지정해제

○ 관련법규

- ▶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의4
- ▶「서울특별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○ 지정해제요건

▶ 기상,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

- ▶ 지정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,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▶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·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Ⅴ 추진일정

○ '19. 7월 : 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요청(자치구 → 시)

○ '19. 7월 : 전문가 합동조사 및 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결정

○ '19. 8월 : 지정(지정해제) 예정 수목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

○ '19. 9월 : 보호수 지정(지정해제) 고시

Ⅵ 행정사항

○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제출 '19.11.29.까지

붙임 1. 보호수 지정관리대장(서식) 1부

- 2. 보호수 지정 요청(서식) 1부
- 3. 보호수 지정해제 요청(서식) 1부
- 4. 보호수 지정 및 관리지침 1부. 끝.